#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\* 현황과 대책 -

배 인 명 (서울여자대학교 교수)

# I. 머리말

최근 들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여러 나라의 골칫거리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. 2013년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파산이 대표적 인 예이다. 그 외에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도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.

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성남시가 모라토 리엄을 선언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대한 우려가 높다. 언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재정파탄 위기의 문제 를 크게 다루고 있고, 중앙정부 역시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심각하게 부각 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제는 지방자치단 체도 파산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다.

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정부 역시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주요 어젠다로 설정하고 있 다. 즉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"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"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 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경쟁력을 높 이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. 특히 지방재 정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지방채무 및 지출 관 리를 강화하고. 자치단체·지방교육재정·지 방공기업 등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를 산출 하며 중앙 투・융자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하 고, 재정 공시 확대 및 사업별 원가정보 공 개. 입찰·계약 전 과정 공개 의무화, 지방공 기업과 출자・출연 기관의 체계적 관리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하였다.

지방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다. 하지만 지방재정의 문제 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. 즉 과연 지방자치단체들 이 정말 파산의 위기에 있는지. 아니면 아직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여야 한다. 이러한 인식하에 본고에서 는 우선 안전행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표 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건전성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.

이와 함께 본고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

<sup>\*</sup> 이 글은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산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.

강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. 만약 지방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여 야 하고. 비록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미래 에 닥칠지 모르는 재정적 어려움에 미리 대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.

# Ⅱ. 재정건저성의 의의와 현황

### 1. 재정건전성의 의의

#### 1) 개념

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건전성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. 재정건전성의 개념 정의에 앞서 건전 성과 함께 자주 활용되는 재정책임성의 개념 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.<sup>1)</sup>

Smith(1971)는 책임성을 재정책임성, 프 로그램 책임성. 과정책임성으로 구분하면서 재정책임성을 돈이 적절한 규칙과 동의된 대 로 사용되었는가의 여부와 관련된 책임성으 로 정의하고 있다. 또한 재정책임성은 공공 자금을 대응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정의되기도 한다(Institute of Comparative Law, 2009; Lord Sharman, 2003). 이는 재정의 법적 혹은 규제적인 측

면에서의 입증뿐 아니라 세금에 대한 합당한 가치(value for money)가 달성되도록 하는 의미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. 이러한 주장 은 재정책임성에 효과성의 의미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

미국의 재정책임성 센터(the Center for Fiscal Accountability)에서는 책임성을 "알 권리가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성과(performance)를 모두 그리고 진실되게 공개하도 록 요구하는 과정"이라고 정의하면서 책임 성의 핵심은 적절한 정보에의 접근성임을 강 조하고 있어. 재정책임성의 개념 속에 재정 의 투명성을 포함하고 있다. 이와 더불어 재 정책임성 센터의 주요 업무로 낭비, 남용의 제거, 효율적이고 제한적인 정부의 창조 등 을 들고 있어 효율성을 재정책임성의 주요한 개념 속에 포함하고 있다.2)

재정적 책임성은 균형예산을 의미하기도 한다(http://www.ehow.com, http://en. wikipedia.org/wiki/Balanced budget). 균형예산이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데. 일반적으로 약간의 흑자는 바 람직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한다. 이와 같이 재정책임성에는 재정이 파산 등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재정건전성 의 의미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.

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재정책임성은 효과성, 투명성, 효율성, 건전성 등의 개념을

<sup>1)</sup> 이하는 배인명(2011)을 주로 인용하였다.

<sup>2)</sup> 자세한 것은 http://www.fiscalaccountability.org/about 참조.

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. 그렇다 면 재정건전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. 재정건전성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나. 본고에서는 재 정건전성의 개념 정의를 위하여 Groves(1986, pp. 2~3)의 논의를 활용하기로 한다.

Groves는 재정상태를 다음과 같이 여러 가 지로 정의하고 있다. 첫째, 최협의로 보면 재 정상태는 정부가 30일 혹은 60일 이내에 어 음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, 즉 현금지불능력 (cash solvency)을 지칭한다.

둘째. 협의로 보면 재정상태는 정부가 예산 기간 내에 지불의무를 충족하고 적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충분한 세입을 확보하는 능력. 즉 예산상의 지불능력(budgetary solvency) 을 의미한다.

셋째, 광의로 보면 재정상태는 장기간에 걸쳐 한 회계연도 예산의 지불의무 외에 특정 연도에만 나타나는 채무부담 등의 모든 비용 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, 즉 장기적인 지불능 력(long-run solvency)으로 정의된다.

넷째. 최광의로는 지방정부가 시민이 원 하는 일정 수준의 복지에 필요한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, 즉 서비 스 수준 지불능력(service-level solvency) 을 의미한다.

본고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념을 주로 Groves가 정의한 광의의 개념에 입각하여 활용하고자 한다. 보다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도 있으나 최광의 개념 속에는 효과성이나 효 율성의 개념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.

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은 "장기 간에 걸쳐 한 회계연도 예산의 지불의무 외 에 특정 연도에만 나타나는 채무부담 등의 모 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, 즉 장기적인 지불능력의 정도"로 정의된다. 이러한 개념 속에는 최협의의 개념인 현금지불능력, 협의 의 개념인 예산상의 지불능력도 포함된다.

# 2) 재정건전성의 측정방법: 지방재정 위기진단 사전경보시스템

이상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념을 살펴보 았다. 다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. 이를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안전행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"지방재정 위기진단 사전경보시스템" 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.

안전행정부는 2011년 지방재정법 및 지 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. 자치단체별 재정상 황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통합재정수지 적 자 비율이 높아 재정위험이 우려되는 단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고. 재정위기단체 는 지방채 발행·신규 사업 등의 제한을 받으 며 재정건전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. 이를 위해 5개 관점의 7개 지표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모니 터링하고 있는데, 활용되는 지표들은 〈표 1〉 에 요약되어 있다.

#### 〈丑 1〉

#### 지방재정 위기진단 사전경보시스템 분석지표

관점	재정지표	산정방식	「주의」 기준	「심각」기준
재정 수지	① 통합재정수지적자 비율	(세입 - 지출및순융자) 통합재정규모	25% 초과	30% 초과
채무 관리	② 예산대비 채무비율	지방채무 잔액 총예산	25% 초과	40% 초과
	③ 채무상환비 비율	지방채무 상환액 일반재원	12% 초과	17% 초과
세입 관리	④ 지방세 징수액 현황	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 최근 3년 평균 월별 징수액	50% 미만	0% 미만
자금 관리	⑤ 금고잔액 현황	당해연도 분기말 잔고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	20% 미만	10% 미만
공기업	⑥ 공기업 부채비율 ⑦ 개별공기업 부채비율	<u></u> 부 채 순자산	400% 초과	600% 초과

각 지표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 3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은 재정 은영 전반에 걸쳐 총세입과 세출 부문의 차 이를 비교하여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정도 를 측정하는 지표이다. 통합재정이란 자치 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 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를 말하며, 통합재정수지는 당해 회계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 로. 정부의 금융활동으로 간주되는 보전재 원은 제외한다.

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채무의 절대적 수준 을 측정하는 지표로,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악화됨을 의미한다. 국가의 경우 채무비율을 GDP 대비로 산출하지만 지자체 의 경우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까지의 총예산을 기준으로 한다.

지방채상화비 비율은 일반재원 결산액 대 비 과거와 미래 4년간의 지방채무상환비율로 채무상화에 따른 장기적 재정운영의 안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,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 상화의 부담이 가중됨을 의미한다. 이 지표는 한 회계연도가 아닌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표들과 차별된다.

지방세징수액 현황지표는 세입기반조달 능력 및 재정의 안정성 상태를 측정하는 세 입관리 지표이다. 동 지표는 경기위축 심화. 감세정책 등 지방세 감소의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 측정의 의미가 있으며, 경기침체 등 으로 지방세수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시점 에서는 모니터링 지표로 효용성이 크다. 또 한 최근 3년 평균 지방세의 분기말 누적액과

<sup>3)</sup> 이하는 안전행정부 내부자료를 주로 인용하였다.

당해연도 분기말 누적액을 비교하는 것으로 지방세수의 징수가 감소하는 단체에 대한 모 니터링의 의미가 있다.

금고잔액 현황지표는 '최협의의 재정건전 성'을 판단하는 현금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 표로. 3년 평균 대비 당해연도 분기말 금고 잔액의 비율로 측정한다. 지방세징수 현황 과 같이 경기침체 심화. 감세정책 및 조기집 행으로 금고의 여유재원이 문제가 되어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활용될 수 있 는 바람직한 측정지표이다.

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기업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.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공기업 재정운용의 적정성 및 건 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, 자기자본 대비 타 자본의 크기를 나타내며, 부채비율의 높고 낮음으로 공기업의 경영상태 및 문제를 파악 할수있다.

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위에서 살펴본 지 표들은 앞에서 설명한 재정건전성의 개념을 잘 반영하여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라고 판단된다.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방재정 위 기진단 사전경보시스템 분석지표를 활용하 여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현황을 살펴 보기로 한다.

# 2. 현황

## 1)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

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재정운영 전반

에 걸쳐 총세입과 총세출의 차이를 비교하여 재정건전성의 악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. 주의 기준은 25% 초과, 심각 기준은 30% 초 과로 설정되어 있다. 2006년부터 2010년까 지 광역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주의 기준 이상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. 한편 적자비율이 10% 이상인 경우는 2009년 3개 자치단체로 나타났고. 나머지 해에는 해당되는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.

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주의 기준인 25%를 초과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의 수는 2007년 2개. 2008년 2개. 2009년 3개. 2009년과 2010년은 0개로 나타났다. 하지 만 특정 연도에 25%를 초과한 기초자치단체 들의 경우에도 그 다음 연도에는 25% 미만 으로 나타나 재정적 어려움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.

#### 2) 예산대비 채무비율

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채무의 절대적 수준 을 측정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 전성이 악화됨을 의미하며, 위기 기준은 25% 초과. 심각 기준은 40% 초과이다. 2009년부 터 2011년까지의 광역자치단체 예산대비 채 무비율이 주의 기준인 25% 초과인 경우는 매 년도 각각 3개 자치단체인 것으로 분석되었 으나. 심각 기준인 40%를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기초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살

펴보면 주의 기준인 25%를 초과하는 기초자 치단체들의 수는 2009년 5개, 2010년 6개, 2011년 3개로 나타났다. 그중 심각 기준인 40%를 초과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의 수는 2009년에는 없었고. 2010년과 2011년 각 각 1개씩으로 나타났다.

#### 3) 채무상환비 비율

채무상환비 비율은 일반재원 결산액 대비 과거와 미래 4년간의 지방채무상환비의 비 율로 채무상환에 따른 장기적 재정운영의 안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.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됨을 의미하며. 주의 기준은 12% 초과, 심각 기준은 17% 초 과이다. 광역자치단체 채무상환비 비율을 살 펴보면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주의 기준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는 하나도 없었고. 2011년에는 1개의 광역자치단체만 심각 기 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기초자치단체의 채무상환비 비율을 살펴 보면 2009년과 2011년 사이 주의 기준인 12%를 초과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 채무상환의 압박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.

# 4) 지방세징수액 현황

지방세징수액 현황지표는 세입기반조달 능력 및 재정의 안정성 상태를 측정하는 세 입관리 지표로 50% 미만은 주의, 0% 미만은 심각 수준으로 분류된다. 광역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주의나 심각 기준에 해당 되는 자치단체는 하나도 없어 모두 우수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.

기초자치단체 역시 주의 및 심각 기준에 해 당되는 자치단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. 70% 미만의 자치단체 수도 2010년 3개, 2011년 1개, 2012년 4개에 그치고 있 다. 이러한 결과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감 소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.

#### 5) 금고잔액 현황

금고잔액 현황지표는 '최협의의 재정건전 성'을 판단하는 현금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 표로, 20% 미만은 주의, 10% 미만은 심각 자치단체로 분류된다.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주의 기준보다 낮은 자치단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금유동성에는 큰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
기초자치단체 역시 주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치단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 지표값이 70% 미만인 자치단체의 수는 2011 년과 2012년 각각 28개와 11개로 나타났 다. 이러한 결과는 기초자치단체 역시 현금 유동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

# 6) 지방공기업 부채비율

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기업의 안정성을

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며, 현재 자치단 체별로 전체 공기업을 합산한 부채비율과 개 별 공기업의 부채비율을 모니터링하고 있다. 주의 기준은 400% 초과, 심각 기준은 600% 초과로 설정되어 있다.

개별 공기업의 부채비율을 보면 400% 이 상 공기업 수는 2009년 16개, 2010년 15개, 2011년 15개로 나타났다. 그중 600% 이상 의 공기업 수는 매년 각각 7개씩으로 나타났 다. 하지만 비록 주의 및 심각 기준을 상회한 다 하더라도 자본금이 적어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공기업도 있는데, 이러한 공기업 들은 지방재정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. 또한 대부분의 지방공기 업은 100% 미만의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어 일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공 기업의 부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된다.

# Ⅲ.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

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 방재정의 건전성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큰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나 책임성 강 화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도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이고. 중앙정부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. 더욱이 기 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앞날이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에서, 지방재정의 건 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

#### 1.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

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건전 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이 제고되어야 한 다.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. 지방자치단체 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정이 서로 연계되 어야만 효율적인 공급의사결정을 할 수 있 다. 즉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결정은 조 세가격 및 기회비용의 비교분석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만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데. 이러한 결정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 체에서만 가능하다(Oates, 1972), 만약 중 앙정부가 생산과 공급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 한다면 편익보다 비용이 큰 서비스의 경우에 도 공급 확대의 압력을 받게 되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한다.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 확대는 지방재정 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 건이라고 할 수 있다.

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 간에는 큰 괴리가 있다. 즉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최종지출 비중은 4:6 수준인 반 면.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약 8:2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. 이러한 지방 세입과 세출 간

의 큰 괴리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아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재정운영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.

#### 1) 지방세의 확충

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재 원의 확충이 필수적이다.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등의 자체재원을 통해 자신들의 서비 스를 공급하여야 지방자치의 장점을 극대화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책임 있는 재 정운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국 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하여 지방세를 확충하 는 등 지방의 자체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 요하다. 이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를 인상 하고 지방소득세를 강화함으로써 취득세 등 재산과세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 체계 를 새로이 개편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이다.

박근혜정부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발표된 안은 실질적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. 즉 최소한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% 이상 인상하여 실질적인 지방세의 확충효과를 얻어야 하며, 단순히 지방소득세를 독립 세원화하는 데 그치지 말 고 추가적인 국세의 이양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소득세의 확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. 이와 같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확충을 통하여 현 정부의 임기 내에 현재 8: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최소한 7:3 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.

#### 2) 의존재원의 축소 및 정비

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확충과 더불어 의존재원을 축소할 필 요가 있다.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 지출이 중앙정부에 비해 더욱 큰 상황인 데.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최 종지출 규모를 굳이 증대할 필요는 없을 것 이다. 따라서 재원중립성의 원칙에 입각하 여 중앙과 지방의 재정구조를 재설계하는 것 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.

의존재원의 축소는 중앙과 지방 간 현실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,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도 큰 의미가 있다. 축소해야 하는 의존재원 으로는 지방교부세보다는 국고보조금이 더 욱 적합하다고 판단된다. 국고보조금은 자금 의 용도가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할 뿐 아니라. 지방비 부담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는 실정이다. 따라서 지방세를 확충하는 대 신 국고보조금을 축소한다면, 지방의 자율성 을 증진시킴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 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.

이와 함께 국고보조율의 합리화가 이루어

질 필요가 있다. 특히 최근 들어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 한 보조율을 재정비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. 국고보조사업의 정비와 보조율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보조사업의 성격을 정확 히 파악하여 종합적인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. 즉 국가사무인지, 지방사무인지, 위임 사무인지의 여부, 그리고 외부효과의 정도. 전국적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의 여 부.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정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. 국고보조사업으로 부적합한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. 국고보조율도 합리 화하여 국가 전체적인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.

# 2. 재정건전성과 책임성 증진 방안40

# 1) 다양한 중앙정부의 감독제도 활성화 및 연계성 강화

현재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을 관리하기 위 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. 구체 적으로 보면 사전적인 재정관리제도로서 중 기재정계획제도. 투·융자심사제도. 지방채발 행총액한도제 등이 있으며 사후적인 관리제 도로 지방재정 분석 및 진단제도, 교부세 인 센티브 및 감액 등이 있으며(손희준, 2013). 2011년부터는 주요 재정상황에 대한 모니터 링 및 재정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경 보할 수 있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 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보다 적절히 보완하 여 활용하고. 또한 제도 간의 연계성을 강화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효 과적으로 점검하고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.

예를 들어 "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"과 "지방재정 투·융자심사"의 연계성을 강화한 다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. 지방재정 투・융 자심사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투자사 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, 재원조달 능력, 사업 우선순위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편 성의 합리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이 다. 동 심사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새로운 대형 사업들은 미래 지방재정의 위험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. 따라서 투・융자 심사 시 사업별 심사쁜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추이나 상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 다. 즉 지방재정 조기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정지표의 모니터링에 그쳐서는 안 되고. 재정투·융자심사 부문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. 이렇듯 두 제도가 서로 보완적으로 운영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실효성을 제고하여 줄 것으로 판단된다.

<sup>4)</sup> 이하는 배인명(2012)을 주로 참고하였다.

이 외에도 지방재정 분석 및 진단제도와 지 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등을 재정위기 사전경 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또한 역할 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운영한다면 지방재정 의 건전성과 책임성,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. 이를 위해 모든 제도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하는 방안도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.

#### 2) 자주적 재정운영 점검 시스템 구축

중앙정부의 통제와 관리보다 더욱 선행되 어야 할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의 재 정운영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. 이러한 시스템 을 바탕으로 각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정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한다면 지방재정의 지 속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.

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장기적으 로 스스로의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모형을 활 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. 이를 위한 다양한 모형들이 있지만, 본 연구에서는 미 국의 ICMA에서 제시한 재정추이감시제도 (financial trend monitoring system)를 소개하고자 한다.

재정추이감시제도는 지방재정 상태를 직 접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지표들뿐 아니라 사 회·경제적 요인들 역시 함께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종합적으로 진단함으로 써 근본적인 치유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

장점이 있다. 재정추이감시제도는 재정상태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크게 환경적 요 인, 조직적 요인, 재정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(ICMA, 1993), 이와 같은 모형을 바탕 으로 지속적으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상황 에 대한 추이분석을 한다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인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도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.

예를 들어 인구가 계속 줄어들거나 중위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미래 재정수 입이 축소되고 복지세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.

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상황 에 맞는, 그리고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실정 에 맞는 모형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지방재 정의 추이에 대한 분석을 한다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, 그리고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. 이를 위 해 안전행정부가 표준 모형을 개발하고 보급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이 편리하고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.

# 3)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제 실시

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는 주민들의 참여 확대가 매우 중요하고 타당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. 이와 관 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

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, 실제로 많은 지방자 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조 레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공청회·간 담회·설명회·토론회 등 자치단체별로 다양 한 주민참여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.

이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하는 좋은 대안이긴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. 주민들이 지 방 행·재정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주민투표제의 도입에 대하여 제안하 고자 한다.

주민투표제도(김병준, 2010)는 지방자치 단체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으로 하여 금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로, 민주 주의의 기본원리인 자기결정을 보장하는 제 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. 뿐만 아 니라 주민의 참정기회를 확대함에 따라 주민 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향상할 수 있으 며.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대립관계를 중 립적 위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
하지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정책문제를 주민의 피상적인 찬반의 반응에 맡긴다는 위 험이 있으며 자치단체의 세입에 차질을 주고 세출을 증대시키는 결정을 할 우려도 없지 않다.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채 발행 등 주요한 사안들에 대 하여 주민투표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리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할 수도 있고 지 역주민들의 지방채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제

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. 결국 지방채를 상화해야 할 주체는 지역주민이기 때문이다.

지방채 발행 외에도 지방재정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(예를 들면 청사 건립 등)에 대해 서도 주민투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. 이러한 제도는 지역주민들의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관심도 나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 이다

#### 4) 정보의 공개

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정보를 공개하 고. 지방자치단체 간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 이러한 방안 역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. 예를 들어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대 지표들에 대 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의 지표값과 순위 를 공개한다면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고. 이를 통하여 지방재 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은 더욱 제고될 수 있 을 것이다.

재정정보의 공개는 박근혜정부에서 추진 하고 있는 정부 3.0과 맥을 같이한다. 정부 3.0이란 "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공유하며,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" 하는 것을 의미한다. 즉 정부 3.0을 통하여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이었던 서비스 공급방 식을 국민 개개인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 공급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. 따라서 정부 3.0에서 강조하는 주 요 가치는 공개, 참여, 개방, 공유, 소통, 협 력 등이라고 할 수 있다. 또한 정부 3.0의 기 본 방향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 로. 전 과정에 대해 국민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이다. 따라서 모든 지방재정 정보의 공개 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주요 과제 중 의 하나이기도 하다. 현재에도 많은 정보들 이 제공되고 있기는 하나 일반 국민들이 활 용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므로 보다 많은 지 방재정 정보를 주민 친화적으로 공개하는 시 스템을 갖추어야 한다. 즉 전문적이고 복잡 한 관료주의적 예산이 아닌, 접근성이 용이 하고 이해하기 쉬운 재정 공개가 이루어져야 만 한다. 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많 은 예산 관련 정보들을 보다 쉬운 언어로 보 다 주민 친화적으로 공개하여 주민과의 소통 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# Ⅳ. 맺음말

본 연구에서는 과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건전성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판 단하기 위하여 현재 지방재정 위기진단 사전 경보시스템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표들을 활 용하여 살펴보았다.

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건전성 측면에서 아직 큰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보인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 치단체의 일부 지표에 문제가 있고, 더 나아 가 미래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. 이를 위해 본 원고 에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여 보았다.

우선.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 확 대를 제안하였다. 이러한 방안은 지방재정 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.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확 대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구조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체재원의 비중을 높여 주어야 한다. 이를 위해 지방세 등 자체재원을 확충하는 대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축소할 필요 가 있다. 또한 국고보조율도 합리화하여 국 가 전체적인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 요가 있다.

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확보된다고 하더라 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 이지 않는다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저 하될 수 있다.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. 그리 고 효율성 등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. 이를 위해 서는 기존의 여러 제도들을 보완하고, 연계 성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다.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스스로의 재정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모니터 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스스로의 재

정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. 또한 주요 사업들 에 대한 주민투표제 등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재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 다. 지역주민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을 져야 할 대상이기도 하고, 지역주민들 역 시 지방재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당사 자이기 때문이다.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모든 재정정보를 공개하고. 지방자치단 체 간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 또 한 보다 많은 예산 관련 정보들을 보다 쉬운 언어로 보다 주민 친화적으로 공개하여 주민 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 이러한 방안 역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.

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하여 지방재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안하였다. 즉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함께 건전 성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다. 하지만 아직 까지 발표되거나 검토되고 있는 대안들은 아 직 기대를 충족하기에 미진한 수준이다.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원래 의도대로 실천되기 위하여 본고에서 제안한 방안들 역시 적극 검토되었으면 한다. **SIET** 

- 김병준(2010), 「지방자치론」, 서울: 법문사.
- 배인명(2011). "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에 대한 연구". 「국정관리연구」.
- (2012), "지방재정의 건전성 현황 및 제고방안", 「국회 지방 3정 발전연구회 창립세미 나 발표논문집」.
- 손희준(2013), "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의 현주소", 「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 나 발표논문집1.
- · Groves, Stanford M. & Maureen Godsey Valente(1986), Evaluating Financial Condition, ICMA.
-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(1993), Evaluating Financial condition: An Executive Overview for Local Government, Washington D.C.: ICMA.
- Oates, Wallace(1972), Fiscal Federalism, NY: Harcourt Brace.
- Smith, B.(1971), "Accountability and Independence in the Contract State", in B.Smith and D.C. Hauge(eds.), The Dilemma of Accountability in Modern Government, Macmillan.
- http://www.comparativelaw.info/ar09.pdf
- http://www.ehow.com/
- http://en.wikipedia.org/wiki/Balanced budget
- http://www.fiscalaccountability.org/about